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 - 6 호

「상주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8월 2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법령에 맞도록 결산 검사 과정을 수정하여 결산 검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위원의 정수를 “3명 이상 5명 이하”에서 “4명”으로 확정·변경함.
- 나. 검사기간 중 감사위원의 결원 시 선임절차 관련 규정을 추가함.
- 다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위임되지 않는 사항인 「상주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

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[www. sangjucouncil.go.kr](http://www.sangjucouncil.go.kr)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 _____

○ 연 락 처 : _____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